#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0.11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처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u>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경기도 가평군 거주자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	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기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0.11.(금)	2024.10.21.(월)	2024.10.22.(화)	2024.10.23.(수)	2024.10.29.(화)	2024.11.01(금)~ 2024.11.10.(일)	2024.11.11(월)~ 2024.11.13.(수)

## 1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시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1-17174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	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금 충족	1순위(12기	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리금 <del>충족</del> )	가입
세대주 요건	_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기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사편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기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교열자구 및 청약교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EH77 (014177 74 00)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sujain-chungpyong.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괴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화 기하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화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del>금융</del> 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 <del>공급</del> /1·2순위)		)			0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0.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가평군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0.21.(월)	2024.10.22.(화)	2024.10.23.(수)	2024.10.29.(화)	2024.11.01(금)~	2024.11.11(월)~
23 	2024.10.21.(월)	2024.10.22.(와)	2024.10.23.(十)	2024.10.29.(와)	2024.11.10.(일)	2024.11.13.(수)
I 57 15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형	, and the second	■ (PC·모바일) 청약홈	■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7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관련사항은 당사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주택건 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가평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공급대금 6억 이상 세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이파트 공급계약서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 품목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서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공급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 등)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	J로부터 6개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 건축과 - 55183호(2024.10.1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81-1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4개동 총 551세대

[특별공급 234세대(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53세대, 신혼부부 82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4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7 CU		고 대를		주	택 <mark>공급</mark> 면적(r	n²)	기타	HOF.	шенн	277			특별공급	<b>  세대수</b>			OIHLTTT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 <del>용</del> 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del>공용</del> 면적	소계	<del>공용</del> 면적 (지하 <del>주</del> 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del>총공급</del>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반 <del>공</del> 급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8539	59	59.8539	18.0056	77.8595	32.2423	110.1018	31.0105	46	4	4	8	1	4	21	25	2
	02	084.9850A	84A	84.9850	22.9887	107.9737	45.7800	153.7537	44.0310	273	27	27	49	8	24	135	138	12
2024000557	03	084.8349B	84B	84.8349	23.1773	108.0122	45.6992	153.7114	43.9533	144	14	14	25	4	12	69	75	6
2024000557	04	113.7801A	113A	113.7801	29.9093	143.6894	61.2915	204.9809	58.9499	63	0	6	0	1	0	7	56	3
	05	113.4179B	113B	113.4179	30.4095	143.8274	61.0963	204.9237	58.7622	25	0	2	0	0	0	2	23	1
					합 계					551	45	53	82	14	40	234	317	24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합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적 환산 시 소수점 4자리에서 단수 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화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 사무소, 주민공동시설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 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신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전용면적 비율로 대지지분을 산정하였습니다.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화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2016.08.12.개정「주택법」제57조의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매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당사에서 면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는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8539	084.9850A	084.8349B	113.7801A	113.4179B
약식표기	59	84A	84B	113A	113B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또는 홍보 제작물과 순서가 상이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면적의 주택형이라도 발코니, 창호위치, 문개폐방향 등의 차이가 있으며, 약식표기한 해당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수정리를 위한 오차는 일부 호수에 할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9	84A	84B	113A	113B	합 계
	국가유공자	1	4	2	-	-	7
기관추천 특별 <del>공급</del>	장기 <del>복무</del> 제대군인	1	7	3	-	-	1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6	2	-	-	9
	장애인	1	7	5	-	-	13
	중소기업 근로자	-	3	2	-	-	5
다자녀가구	가평군 및 경기도 거주자(50%)	2	14	7	3	1	27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50%)	2	13	7	3	1	26
	신혼부부 특별공급	8	49	25	-	-	8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8	4	1	-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4	24	12	-	-	40
	합 계	21	135	69	7	2	234

<sup>※</sup>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공급	<b></b> он		계약금	(E%)			<u>ス</u> こユ	·(60%)		Į L	[위 : 세내, 원] <b>잔금 (35%)</b>
약식	<del>동</del> 별	충구분	공급		08			1차	 2차	1차 (10%)	2차 (10%)	3차 (10%)	4차 (10%)	5차 (10%)	6차 (10%)	전급 (3370)
표기	라인별	ਰਾਦ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	기자 (계약시)	-				2026-04-21			입주지정일
		つる	1	64 0F2 010	222 047 000	_	207 100 000		9,355,000	28,710,000	28,710,000	-			-	100 495 000
		<u> 2층</u> 2 4호	1		223,047,990		287,100,000							28,710,000	, ,	<del></del>
	-	3~4층 「 C *	3		227,942,460	_	293,400,000	, ,	9,670,000	29,340,000	29,340,000	, ,	29,340,000	29,340,000	29,340,000	
59	102동 1,2호	5~6층			232,759,240		299,600,000		9,980,000	29,960,000	29,960,000			29,960,000		
	σ,	7~10층	8		237,576,020	-	305,800,000	, ,	10,290,000	, ,	30,580,000			30,580,000		
	-	11~20층	20		240,062,100		309,000,000	, ,	10,450,000	, ,	30,900,000		30,900,000		30,900,000	
		21~25층	10		243,635,840		313,600,000	, ,	10,680,000	<i>,</i> ,	31,360,000			31,360,000		
	-	2층	4		295,921,210	-	380,900,000	, ,	14,045,000	, ,	38,090,000		38,090,000	38,090,000		<u> </u>
		3~4층	8		302,602,550		389,500,000	, ,	14,475,000	, , , , , , , , , , , , , , , , , , ,	38,950,000			38,950,000		
	101동 1,2,3호	5~6층	8	, ,	309,361,580	-	398,200,000	, ,	14,910,000	<i>,</i> ,	39,820,000		39,820,000			139,370,000
	102동 3호	7~10층	16		316,042,920		406,800,000		15,340,000	, , ,	40,680,000		40,680,000	40,680,000		— <i>′</i> — <i>′</i> — I
		11~20층 -	40		319,461,280		411,20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143,920,000
		21~25층	10	, ,	324,511,130	-	417,700,000	, ,		41,770,000	41,770,000	, , , , , , , , , , , , , , , , , , ,		41,770,000	, ,	<u> </u>
		1층	2		295,921,210		380,900,000			38,090,000	38,090,000			38,090,000		
		2층	4		302,602,550		389,500,000			38,950,000	38,950,000		<u> </u>	38,950,000		
	102동 6,7호	3~4층	8		309,361,580		398,200,000			39,820,000	39,820,000			39,820,000		139,370,000
84A	103동 4,5호	5~6 <del>층</del>	8		316,042,920		406,800,000		15,340,000	40,680,000	40,680,000			40,680,000		142,380,000
	1008 1,02	7~10층	16		322,801,950	_	415,500,000			41,550,000	41,550,000	, ,		41,550,000	41,550,000	145,425,000
		11~20층	40	93,657,380	326,142,620		419,800,000	5,000,000	15,99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146,930,000
		21~25층	18	95,107,530	331,192,470	-	426,300,000	5,000,000	16,315,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42,630,000	149,205,000
		2층	2	87,879,090	306,020,910	-	393,900,000	5,000,000	14,695,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137,865,000
		3~4층	4	89,797,750	312,702,250	-	402,500,000	5,000,000	15,125,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40,250,000	140,875,000
	103동 1호	5~6 <del>층</del>	4	91,738,720	319,461,280	-	411,200,000	5,000,000	15,56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41,120,000	143,920,000
	104동 3호	7~10층	8	93,657,380	326,142,620	_	419,800,000	5,000,000	15,99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41,980,000	146,930,000
		11~20층	19	94,639,020	329,560,980	-	424,200,000	5,000,000	16,21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42,420,000	148,470,000
		21~25층	5	96,066,860	334,533,140	_	430,600,000	5,000,000	16,53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150,710,000

		12	1	07 070 000	206 020 010		202 000 000	E 000 000	14,695,000	20, 200, 000	20, 200, 000	20, 200, 000	20, 200, 000	20, 200, 000	20, 200, 000	127 OCE 000
		1층 2층	2	87,879,090 89,797,750	306,020,910 312,702,250		393,900,000 402,500,000		15,125,000		39,390,000	39,390,000	39,390,000 40,250,000	39,390,000 40,250,000	39,390,000 40,250,000	
		<del>2등</del> 3~4층			319,461,280		411,200,000		15,560,000						41,120,000	
	104동 5,6호	5~6층	4		326,142,620		419,800,000		15,990,000		41,120,000	41,120,000 41,980,000	41,120,000 41,980,000	41,120,000 41,980,000	41,980,000	, ,
	1048 3,05	7~10층	8	95,598,350	1 1		428,500,000	· · ·	16,425,000		42,850,000	42,850,000	42,850,000	42,850,000	42,850,000	
		7~10등 11~20층	20		336,242,320		432,800,000		16,64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21~25층	10		341,292,170	_	439,300,000		16,965,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43,930,000	
		1층	2	85,960,430	+		385,300,000		14,265,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134,855,000
		 2층	4		306,098,600		394.000.000		14,7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39,400,000	, ,
		- 28 3~4층	8		312.857.630	_	402,700,000	<i>' '</i>	15,135,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40,270,000	
	101동 4,5호	5~6층	8		319,538,970	_	411,300,000	, ,	15,565,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103동 2,3호	7~10층	16		326,298,000	_	420,000,000		16,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7 108 11~20층	40		329,638,670	_	424,300,000	, ,	16,215,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21~25층	16	96,111,480	334,688,520	_	430,800,000		16,540,000		43,080,000	43,080,000	43,080,000	43,080,000	43,080,000	150,780,000
84B		1층	2		289,239,870	_	372,300,000		13,615,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37,230,000	
		2층	2		295,998,900	_	381,000,000	· ·	14,05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 <u>-</u> 3~4층	4		302,757,930	_	389,700,000		14,485,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38,970,000	
	102동 4,5호	5~6층	4		309,439,270	-	398,300,000	· ·	14,915,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39,830,000	
		7~10층	8		316,198,300	-	407,000,000		15,35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40,700,000	
		11~20층	20		319,538,970	-	411,300,000	5,000,000	15,565,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41,130,000	
		21~25층	10		324,588,820		417,800,000		15,89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146,230,000
		2층	1	112,015,660	390,349,400	39,034,940	541,400,000	5,000,000	22,07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189,490,000
		3~4층	2	114,395,010	398,640,900	39,864,090	552,900,000	5,000,000	22,645,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93,515,000
	101 E C=	5~6층	2	116,795,050	407,004,500	40,700,450	564,500,000	5,000,000	23,225,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197,575,000
	101동 6호	7~10층	4	119,174,400	415,296,000	41,529,600	576,000,000	5,000,000	23,8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201,600,000
		11~20층	10	120,374,420	419,477,800	41,947,780	581,800,000	5,000,000	24,090,000	58,180,000	58,180,000	58,180,000	58,180,000	58,180,000	58,180,000	203,630,000
1124		21~22층	2	122,153,760	425,678,400	42,567,840	590,400,000	5,000,000	24,52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59,040,000	206,640,000
113A		1층	1	107,256,960	373,766,400	37,376,640	518,400,000	5,000,000	20,92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51,840,000	181,440,000
		2층	2	109,636,310	382,057,900	38,205,790	529,900,000	5,000,000	21,495,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52,990,000	185,465,000
		3~4 <del>층</del>	4	112,015,660	390,349,400	39,034,940	541,400,000	5,000,000	22,07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54,140,000	189,490,000
	104동 1,2호	5~6층	4	114,395,010	398,640,900	39,864,090	552,900,000	5,000,000	22,645,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93,515,000
		7~10층	8	116,795,050	407,004,500	40,700,450	564,500,000	5,000,000	23,225,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56,450,000	197,575,000
		11~20층	20	117,974,380	411,114,200	41,111,420	570,200,000	5,000,000	23,51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57,020,000	199,570,000
		21~23층	3		417,386,900					57,890,000		57,890,000		57,890,000		202,615,000
		1층	1		378,308,700											
		2층	1		386,600,200											
		3~4층	2		394,891,700											
113B	104동 4호	5~6층 -	2		403,183,200											
		7~10층 -	4		411,546,800											
		11~20층	10		415,656,500								l			
		21~25층	5	121,077,880	421,929,200	42,192,920	585,200,000	5,000,000	24,26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204,820,000

## ■ 공통유의사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으므로 청약 신청 시 공급안내문 및 사이버모델하우스에 표기된 주택형별 형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전용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하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사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오니 청약 신청 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봅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한도 축소 등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은 책임지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는 계약 해지의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 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일정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5%), 중도금(1~6회차 60%), 잔금(35%)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변경내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공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청약, 계약자에게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법원의 공사중지 결정, 노동조합의 파업, 전염병 발생 등과 정부의 정책,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인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십시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구입 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02.21.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 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설립 후 토지 취득 시「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계약 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배치도, 카탈로그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	비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발.	표일이 다른 주택	<b>당첨자발표일</b>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당첨자발표일</b> 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격</b>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강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 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을 말함							

##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5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 시·도(가평군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해당 시·도(가평군 및 경기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주택건설지역(가평군)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해당 시·도(가평군 및 경기도)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기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배점항목     총배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영유아 자녀수(2)     15	기준 4명 이상 3명 2명	<b>점수</b> 40 35	비고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3명 2명					
	3명 2명					
	2명	35				
영유아 자녀수(2)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5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del>무주</del> 택인 기간으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1년 이상 ~ 5년 미만	5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기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화한 경우 전화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4-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 <del>득구분</del>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 <del>공급</del>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 <del>공급</del>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 <del>공급</del>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 <del>공급</del>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પાક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0.11.(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비고

당첨자 선정방법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b>578</b>	비율	소득금액						
2	소 <del>득구분</del>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2777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워수에 포함되는 가구워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워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장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 종류  구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sup>구넥</sup> -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경우 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장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4
-/1	-/1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	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	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 <del>존속</del> (8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자	예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b>	분									
		실 <b>경과</b>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1)시 <b>역</b> : 해당시역 거수사(가평군 거수사)→ 기타시역 거수사(경기노, 서울특별시, 인전광역시) ② <b>가점</b>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del>-</del>		건성하며, 정확기점 점구기	논인의 기세 오류에 의한 얼놋으로 편령될 경구	- 구석석 당심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점수		점수						
	1201	120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u>6년 이상 ~ 7년 미만</u>	14	15년 이상	32						
			<u> 7년 이상 ~ 8년 미만</u>	16								
당첨자			<u> </u>	5	<u>4</u> 8	25						
선정방법	② <b>부양가<del>족</del>수</b>	35	<u>1명</u>	10	<u>5명</u>	30						
			<u>2명</u> 3명	15 20	6명 이상	35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 <del>주</del> 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1) + (2) + (3)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l,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자	축으로 전화한 경우 전화개설한 날을	기준 <u>으로</u>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HI T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비고												

	에 의소 극결(				선중한적 OSIII 이야 중합 세네구의 3개 함치 · 40세년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제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하는 분  ### (하나 기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당첨자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선정방법	3단계	우선공급(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 <del>공</del> 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기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거주자)→ 기타지역 거주자(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 소득기준		주 르타르는 기독단계중성자와 다양단	[세공병자들 동에 확인			
비고	■ 소득기준			[게공병자들 홍애 확인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del>꼬ㅋ [                                   </del>	비표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 <del>공급</del>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401 717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인 가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u>구분</u> 부동산	금액 3억3,100만원	건축물	주택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내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토지	단, 아래 경 * 「농지법」 * 「초지법」 * 공부상 도 * 종중소유 구체적인	경우는 제외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0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저 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세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구분			내용			
FILLET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대상자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 1순위					
		청가 <del>능</del> 하 청얀예근에 가인하0	여 <b>12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	산이 부		
			H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		R5㎡ 이하 즈태형에 하하\	
			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400 E(E00-	55 III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자격요건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기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	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0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u> </u>	기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	목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4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경험자 선정 문자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가점 → ③ <b>청약통장 가입기</b> 간	<u> </u>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30,00	- 9. <u>-</u>			
		30,00	- 9. <u>-</u>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30,00	- 9. <u>-</u>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30,00	- 9. <u>-</u>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30,00	- 9. <u>-</u>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b>무주택자 우선공급</b> → ③추침	g S · 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 <b>무주택자 우선공급</b> → ③추침	- 9. <u>-</u>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한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 - - - - - - - - - - - - - - - - - -	g S · 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한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 - - - - - - - - - - - - - - - - - -	g S · 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마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마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가주자) → 기타지역 거주지 참제 적용비율	함 사(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분			추첨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남 사(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분 50㎡ 이하		40%	60%
당첨자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가주자) → 기타지역 거주지 참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3	보 상(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40% 40%	60% 60%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보 상(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40%	60%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보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40% 40%	60% 60%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취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보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점수	40% 40%	60% 60% 100%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천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35㎡ 초과	점수 0	40% 40% -	60% 60% 100%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천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분 60m² 이하 초과 85m² 이하 35m² 초과		40% 40% - 가점구분	60% 60% 100% 점수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천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반(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분 50m² 이하 초과 85m² 이하 35m² 초과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40% 40% - - 가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60% 60% 100% 점수 18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천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반(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분 50m² 이하 초과 85m² 이하 35m² 초과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0 2	40% 40% - <b>가점구분</b>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60% 60% 100% AA수 18 20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천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P구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분 50m² 이하 초과 85m² 이하 35m² 초과	0 2 4 6 8	40% 40% - <b>가점구분</b>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60% 60% 100% <b>점수</b> 18 20 22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취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가점항목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근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지 참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3 전용면적 8 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상한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35㎡ 초과 가점구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0 2 4 6	### 40% 40% - ### 7점구분 8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 12년 미만	60% 60% 100% <b>점수</b> 18 20 22 24
당첨자 선정방법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취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가점항목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근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지 참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3 전용면적 8 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상한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35㎡ 초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 2 4 6 8	### 40%  40%  - ***  ******************************	60% 60% 100% Ad 18 20 22 24 26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가평군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취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  가점항목	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침 근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지 참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3 전용면적 8 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상한	분 50㎡ 이하 초과 85㎡ 이하 35㎡ 초과  ***  *** *** *** *** *** *** *** ***	0 2 4 6 8	### 40%  40%  - ***  ******************************	60% 60% 100%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0명	5	4명	25
② <b>부양가족수</b>	35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17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기업기단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ull O 7 L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괴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한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ч в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작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압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압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작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이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작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작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압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작계존속(배우자의 작계존속을 포함)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명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작계바속은 압주자모집공고일을 가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활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와국인인 작계바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미만) 압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 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del>공급</del> 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청약자격(주택소유 - 세대원 등록방법 :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0.29.(화) ~ 2024.11.07(목) (10일간) - 조회기간 (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0.29.(화)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 분	서류 제출 기간	서류 제출 장소
특별공급 / 일반 <del>공급</del> 당첨자 (예비당첨자는 추후 별도 통보)	2024.11.01.(금) ~ 2024.11.10.(일) 10:00 ~ 17:00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견본주택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74번지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 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 공급 예비 포함)

## ■ 〈표1〉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서류유형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견본주택 비치,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0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견본주택 비치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시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 <u>표</u> 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사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포함하여 발급	
E 出 フユ	0		가 <del>족</del> 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공통서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0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0	복무확인서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0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된인  하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보인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워 저워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1 =)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개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 <del>존속</del>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포함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추천명부로 대체)	
다자녀가구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부이	• 견본주택 비치(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특별공급		0	한부모가 <del>족증</del> 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개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 진단서만 인정)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배우자	• 자녀 입양의 경우
	지계조소 의 기계조소 이 있는 기계조소 이 기계조소 이 있는 기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Hal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확인 등)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del>본</del> 인	• 혼인신고일 확인(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0		소 <del>득증</del> 빙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2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신혼부부		0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작성)
특별공급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기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 표4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 진단서만 인정)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0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가점 검산용)
	0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포함"으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 <del>존속</del>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 <del>공급</del>		0	가 <del>족</del> 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주민등록등·초본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7208		0	주민등록표초본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
	0		소득세 납부 인증서류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아래 표3 참조]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 진단서만 인정)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 입양의 경우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견 <del>본주</del> 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과거 자격변동사항이 전부 표기되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표시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소 <del>득증</del> 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아래 표2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0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모두 작성)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기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유 부동산 자산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아래 표4 참조]     ** 자산증빙서류는 세대원 전원(영유아,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이 예외 없이 제출하여야 함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 <del>존속</del>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0		대리인 신 <del>분증</del> , 도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sup>※</sup>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sup>※</su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sup>-</sup>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전체)

<sup>-</sup>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sup>※</sup>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표2〉신<del>혼부부</del>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del>득증</del>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계속적인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근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연봉)계약서 상의 총 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직장 ③ 국민연금관리공단	
자	전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재직증명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	①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사항증명서(직인날인) ②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 결정통지서(직인날인) ③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	①, ②, ③ 해당직장 ②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자 영 업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자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③ 전년도 법인의 제무재표 또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배당소득 유무 확인)	① 등기소 ②, ② 세무서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모집공고일 이전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 명세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해당)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	
	무직자	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sup>※</sup>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sup>※</sup>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sup>※</sup>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① 해당직장 ② 건강보험 <del>공</del> 단 ③ 세무서
자격 입증서류	자영업자 / 농업종사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④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①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③ 세무서 ④ 정부24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또는 세무서 ② 건강보험 <del>공</del> 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sup>※</sup>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자산입증 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주민센터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 서울시: 'ETAX이용안내 〉조회/발급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서울시 외: '위택스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건원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전원) 발급, ※미성년자 포함)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 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지방세 과세증명서 ※ 전국기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출력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sup>※</sup>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sup>※</sup>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sup>※</sup>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견본주택에 비치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II.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주민 <del>등록표등본</del>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시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포함하여 발급	
일반 <del>공급</del> 공통서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0.111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 사실 증명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0	복무확인서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 복무 기간을 명시	
		0	주민 <del>등록표등본</del>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중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본인 배우자,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청약통장 기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한 경우, 이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청약통장 기입은행) 창구 방문 〉청약통장 기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일반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수 제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전체포함"으로 발급)	
가점제 당첨자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 <del>존</del> 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11 - 7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주민등록등·초본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0	주민 <del>등록표초본</del>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작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I017.07.1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청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0		위임장	본인(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0		대리인 신 <del>분증</del> , 도장	본인(청약자)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7의3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 저가주택 등"이라 전용면적 60m'이하로 주택가격이 1억워 (수도권은 1억 6천만원)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하다.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 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유주택자로 보는 경우(예시)

경우

- ①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② 일부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복합용도 건물을 소유한 경우
- ③ 분양주택(LH, 지방공사 등)으로써 사업주체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사실상의 소유자로 재산세를 부과하였거나 하고 있는 경우
- ④ 무허가 건물이었으나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라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경우
- ⑤ 별장으로 과세되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나 건축물대장(건물등기사항증명서)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매입임대사업자가 사업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⑦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정당당첨자가 정당계약을 하거나,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해당 단지의 잔여세대를 추가 계약한 경우
-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 주택의 순위 내 청약에서 공급 가구 수보다 많은 청약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한 주택유형(타입)을 계약한 경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특별공급 / 일반공급)	2024.11.11.(월) ~ 2024.11.13.(수), 3일간(10:00 ~ 17:00)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견본주택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74번지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 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ПП	서류유형		웨다니크	바그 기ス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해당서류	발급 기준		
	○ 자격검증서류		_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 서류	_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0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_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75.117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공통서류	0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0		인지세(정부수입인지)	-	•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 아파트 공급계약(발코니 확장계약 포함)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연대하여 균등(1/2) 납부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18 ALL-40 000 VIL VILLA 000 0)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0	당첨사실 소명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대리 계약시	0		위임장	계약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추가 구비서류	0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sup>※</sup>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4.01.01. 개정된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 하기로 합니다.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계약자 분담분)를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계약자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비랍니다.

#### ※ 납부방법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발행 불가)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2-474764	대한토지신탁(주)

- ※ 상기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까지의 분양대금은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화불이 가능하며, 화불이자는 없습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시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7일)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승인(변경 포함)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계약자 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인 중도금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대출 알선은 의무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 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기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5%(계약금) 완납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기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자는 최초 대출이자 발생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부담하고,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이후부터는 계약자의 실제입주일과 관계없이 계약자가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는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 완납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에 따라 중도금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약정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융자지원 부분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금액은 금융기관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축소 될 수 있으며, 특히 입주시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담보비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은행과 중도금대출 협약 등에 의거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시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이의제기 및 보상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9 발코니 확장

## ■ 발코니 확장공사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실내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실내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 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용주체 또는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del>급금</del>액

[단위:원,VAT포함]

주택형	59	84A	84B	113A	113B
발코니 확장 금액	11,560,000	16,050,000	15,960,000	21,380,000	21,340,000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및 추가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기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본공사시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사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시 인·허가 혐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향후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환기구, 급배수관,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 시 제공품목 등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 평형이라도 해당 동, 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허용오차 내)
- 발코니 비확장시 발코니 바닥단차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온도조절기, 전기/통신분전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점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 내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1과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최상층을 제외한 1층에서 기준층 세대 비확장 발코니는 천장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발코니2(다용도실)는 별도의 천장 마감이 없으며 수성페인트로 마감됩니다.(최상층세대 제외)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사용 면적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울 사용하실 수없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장 및 바닥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으며, 기본형으로 설치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협	131-022-474942	대한토지신탁(주)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VAT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및 선택 옵션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충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금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관리계좌(모계좌)입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내에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 입금(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후 입금증은 견본주택으로 제출 바랍니다.
- 중도금·잔금 납부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납부기일과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확장 공사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대금, 추가 선택품목 계약의 계좌가 각각 상이하오니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 추가선택 품목

## ■ 추가선택 품목(모든 플러스 옵션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추가선택 품목은 ㈜한양과 고객 간의 계약이며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세부사항(계약일정 등)은 추후 견본주택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단종,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발에 따라 동종, 동급 수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 공기청정형 환기제어시스템, 온도조절기,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모든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1. 주방가구 외

구분	품목	내용	주택형	공 <del>급금</del>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유리 상부장 (조명+독립형후드 포함)	59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84A	2,100,000	210,000	210,000	1,680,000
			84B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113A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가구특화		113B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유리 장식장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수납장 선택시 선택기능)	113A	400,000	40,000	40,000	320,000
			113B	400,000	40,000	40,000	320,000
주방		홈바	113A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113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주방	주방 세라믹 상판 및 벽체	59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84A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84B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상판 및 벽체		113A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113B	3,700,000	370,000	370,000	2,960,000

다용도실 보조주방가구		보조주방가구 입식빨래볼 (수전포함/59타입 제외)	84A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HマスHトフレフ		84B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포조구경기구		113A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113B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2. 욕실 [단위:원,VAT포함]

구분	품목	내용	주택형	<del>공급금</del>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욕실 1, 2 다기능			59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84A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다기능 배기팬	FHD3-C150P	84B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13A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13B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3. 미감 외 [단위:원,VAT포함]

구분	품목	내용	주택형	공 <del>급금</del>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조명		* 59/84A/113A/113B 거실-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주방 - 우물천장 간접등, 라인조명 침실-직간접조명(84A 알파룸포함)	59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84A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조명특화		84B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84B 거실−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113A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주방 - 라인조명 / 침실-직간접조명	113B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벽판넬	59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가구 또는 시트판넬 +픽처레일 (현관, 복도, 주방, 거실)		84A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벽판넬 1 (*84B타입 대형세라믹 아트월 선택시 / *113A,B타입 홈바 선택시)	84B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벽체			113A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마감특화			113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84B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113A	3,000,000	300,000	300,000	2,400,000
			113B	3,200,000	320,000	320,000	2,560,000
		대형 세라믹 아트월(거실)	59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A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벽체 마가트링			84B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마감특화			113A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113B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84A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침실 1	고급형 드레스 <del>룸</del>	도어 : 지정유리 내부 : 벽판넬+벽부형 선반(일부 조명적용)	84B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916	11T - 102 1TO 00(2T 1010)	113A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113B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침실 2 붙박이강 제작가구	59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84A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침실 2		제작가구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113A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113B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59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A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침실 3	침실 3 불박이장 제작가구	제작가구	84B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113A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113B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 주방 유리상부장 선택시 독립형 후드로 설치되며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유리상부장은 재료의 특성상 손자국 등의 얼룩이 일반 가구마감대비 발생하기 쉽습니다.
- 주방 유리상부장 선택시 상부장 내부에 조명이 설치(ON/OFF가능)되고 미선택시 키큰장 마감재와 동일한 마감재로 상부장이 설치되며 조명은 설치되지 않고 내부 선반은 바디재로 설치됩니다.
- 주방 유리상부장 미선택 시 113A, 113B는 일부 상부장 입면이 옵션 선택시와 상이하게 적용되며 유상옵션 선택시 타일 측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유리상부장 선택시 59, 84B타입은 아일랜드에 콘센트가 포함되며 본 공사시 설치 위치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 특화 중 유리 장식장(ON/OFF가능)은 113A, 113B타입에 해당되며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수납장 선택시에만 선택가능합니다.
- 가구 특화 중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수납장 선택시 유리 장식장 미선택하시면 가구도어로 설치되며 내부 조명은 설치되지 않고 일반 선반으로 설치됩니다.
- 가구 특화 중 주방 홈바는 113A, 113B타입에 해당되며 가구 특화 중 주방 홈바의 콘센트는 본 공사시 설치위치 및 사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 특화 중 주방 홈바 선택시 주방 스위치와 공기청정형 환기제어시스템 스위치 위치는 변경됩니다.
- 가구 특화 중 주방가구 특화와 침실2, 침실3 붙박이장의 가구의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도배지, 천장지, 강마루 등)
- 주방 상판과 벽, 대형세라믹 아트월의 세라믹은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패턴이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시공되는 것은 불기합니다.
- 주방 상판과 벽 세라믹의 이음새 위치, 개소 및 패턴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이음매는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과 벽 옵션 미선택 시 상판은 인조대리석(MMA), 벽은 타일(사이즈 약 300X600mm)이 설치됩니다. 인조대리석(MMA)상판과 벽타일 사이에는 인조대리석 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보조주방가구의 상판인 인조대리석(MMA)는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기능 배기팬의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선택시 일반 배기팬이 설치되며 본 공사시 배기팬의 위치와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기능 배기팬의 설치 위치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명 특화 중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 라인조명, 침실조명은 개별선택이 불가합니다.
- 조명 특화 선택시 거실 우물천장 일체형 조명의 분전함인 SMPS함이 신발장 상부 또는 냉장고장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분전함의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고 해당 수납장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조명 특화 미 선택시 거실 우물천장에는 직부등이 우물천장 내 설치되고 주방에는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일반 매입등으로 설치됩니다.
- 조명 특화 미 선택시 침실에는 직부등이 설치됩니다.
- 84B타입의 조명 특화는 거실 우물천장이 주방까지 확대되어 있어 별도의 주방 우물천장 간접조명이 없습니다.
- 조명 특화 미 선택시 거실 및 침실은 스위치가 각 1회로로 적용되며, 주방은 사각 매입등이 2개가 설치되어 2회로로 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본 공사시 우물천장의 크기는 천장 설비배관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마감 특화 중 벽판넬 선택시 가구판넬 또는 시트판넬, 픽처레일이 설치되며 타입별 적용범위가 상이하고 본 공사시 벽판넬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체 마감 특화 중 벽판넬 선택시 픽처레일은 일부 벽면에만 설치되며 레일 외의 부자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84B타입의 벽체 마감특화 중 벽판넬은 대형 세라믹 아트월 선택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대형 세라믹 아트월 선택시 벽판넬 1을 선택하시고 대형 세라믹 아트월 미선택 시 벽판넬 2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113A, 113B타입의 벽체 마감특화 중 벽판넬은 주방 홈바 선택여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주방 홈바 선택시 벽판넬 1을 선택하시고 주방 홈바 미선택 시 벽판넬 2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벽체 마감 특화 중 벽판넬 유상옵션은 84B, 113A는 벽판넬1로 설치되어있습니다.
- 벽판넬 유상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의 아일랜드 가구와 벽의 벽지와 만나는 부위에 해당 상판과 동일한 인조석 턱이 생깁니다.(벽판넬 선택시에는 미설치)
- 벽체 마감 특화 중 대형 세라믹 아트월은 세라믹 타일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타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형 세라믹 아트월 타일의 줄눈은 시공되지 않으며 대형 세라믹 타일 미선택시 기본형 포세린 타일(사이즈 약 600X600mm)이 설치되고 커텐박스 라인에 맞춰 시공되며 커텐박스 라인은 벽지로 시공되고 재료분리대가 설치예정입니다.
- 84B타입은 대형 세라믹 아트월 선택시 복도 일부가 포함되어 설치되며, 아트월 또는 복도 일부만 별도 선택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 유상옵션 미선택시 가구 도어가 설치되고 벽판넬은 설치되지 않으며 벽에는 벽지가 시공되고 포스트 타입의 시스템 선반이 설치됩니다. 시스템가구 및 하드웨어는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 선택시 시스템선반 영역이 미선택시와 상이하오니 이 점 확인하시어 선택바랍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 선택시 조명형 선반 상부로 조명 선이 노출될 수 있으며 조명형 선반은 높낮이 조절이 불기합니다.
- 고급형 드레스룸 선택시 벽판넬 설치로 내부 안목치수가 상이합니다.
- 113A, 113B 타입은 고급형 드레스룸 미선택 시 센서등으로 설치되며 스위치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시 가변형 벽체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침실2 또는 침실3 붙박이장의 길이 및 디자인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4. 가전 [단위:원,VAT포함]

구분	품목	내용	주택형	<del>공급금</del>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주방 수납장		59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L H71 7 (L C) - DC 4C 4 A 4 4 / 71 - 11 H71 - 7 (L C)	84A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 ' 냉장고(LG) BC4S1AA1 / 김치냉장고(LG) BC3K1AA1 -	84B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주방			113A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113B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식기세척기	LG DIB22S	전 타입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인덕션	LG BEI3GQBI	전 타입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빌트인 가전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수납장은 가전만 개별선택 불가하며 수납장 구성은 타입별로 상이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수납장 선택시 냉장고는 좌측에 김치냉장고는 우측에 설치될 예정이며 수납장 일부에는 내부에 인출박스가 설치된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수납장 미 선택시 냉장고장과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며 타입별 가구 구성이 상이합니다.
- 빌트인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도어는 색상을 지정하실 수 없으며 미스트베이지로 설치되고 가구와의 이격거리(틈새)가 있습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가구도어로 설치되며, 식기세척기 콘센트도 미설치됩니다.
- 인덕션 미선택 시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되며, 인덕션용 콘센트도 미설치됩니다.

### 5. 태양열 차단 필름

품목	주택형	<del>공급금</del>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설치 위치	업체명
	59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후퍼옵틱 코리아
	84A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건창시공	
태양열 차단 필름	84B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 설치 제외 위치: 하향식 피난구, 침실1내창	
	113A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113B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 태양열차단필름은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실외기실, 발코니 내측창은 시공부분에서 제외되며, 태양열차단필름의 특성상 인공조명과의 간섭에 의한 야간 점등시 무지개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IoT 공기청정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원,VAT포함]

타입	에어컨설치부위	제품명	업체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거실, 침실1	RNW0600C2SP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 ie, de i	RNW0200C2SP		4,200,000	420,000	420,000	3,300,000	
59		RNW0600C2SP						
	거실, 침실1,2,3	RNW0200C2SP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712, 621,4,3	RNW0160K2SP		7,100,000	710,000	710,000	3,000,000	
		RNW0160K2SP						
	거실, 침실1	RNW0720C2SP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712, D21	RNW0230C2SP		4,500,000	430,000	430,000	3,440,000	
		RNW0720C2SP						
84A		RNW0230C2SP			880,000	880,000	7,040,000	
	거실, 침실1,2,3, 알파룸	RNW0200C2SP		8,800,000				
		RNW0200C2SP						
		RNW0160K2SP						
	거실, 침실1	RNW0720C2SP	LG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12, 02,	RNW0230C2SP	LG	1,500,000	100,000	150,000	3,110,000	
84B		RNW0720C2SP		7,300,000		730,000		
	거실, 침실1,2,3	RNW0230C2SP			730,000		5,840,000	
	12, 22 ,-,-	RNW0200C2SP		,,,,,,,,,,,,,,,,,,,,,,,,,,,,,,,,,,,,,,,			-,- :-,	
		RNW0200C2SP						
		RNW0720C2SP						
	거실, 주방, 침실1	RNW0320C2SP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RNW0320C2SP						
		RNW0720C2SP						
113 A,B		RNW0320C2SP						
	거실, 주방, 침실1,2,3,4	RNW0320C2SP		10,400,000	1,040,000	1,040,000	8,320,000	
	12, 13, 12,,-,-,	RNW0200C2SP		12,120,000	1,11,0,000	1,040,000	_,,	
		RNW0230C2SP						
		RNW0200C2SP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공급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제공 품목인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2개소)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 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시스템에어컨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 품목으로 선택 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2개소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만 시공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 등의 관련시설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설치 위치는 타입별·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선택옵션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부분적인 선택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실내기 1대당 1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운전 또는 실외기에 의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 기본선택품목(침실2,3 가변 벽체 선택)

주택형		선택 품	세부내용	비고		
74EL01	71A12 2	<b>ラレストラ</b> ム	기법청 범제	선택 1	분리형	
전타입	침실2,3	확강형	가변형 벽체	선택 2	통합형	_

- 가변형 벽체는 발코니 확장시 가능하며, 침실2와 침실3 통합형 선택시 침실벽지는 침실3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가변형 벽체 분리형과 통합형 선택에 따라 스위치와 배선기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유상옵션 선택 시 침실2.3 가변형 벽체 선택은 불가합니다.

# ■ 추가선택 품목 공급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계좌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입 <del>구분</del>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납입시기	계약시	2025.04.21.	입주지정기간		국민은행	349401-04-345975	(주)한당
납입금액	공급금액의 10%	<del>공급금</del> 액의 10%	공급금액의 80%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 동1001호 홍길동 → 10110	

-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 101동 1001호 홍김동-'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화불신청서를 제출시 화불이 가능하며, 화불이자는 없음)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음.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추가선택 품목(옵션)의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발코니확장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옵션) 대금(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추가선택 품목(옵션)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옵션) 공급계약서에 준함.
- 추가선택 품목(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입주시 개별 납부)
- 추가선택 품목(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 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 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됨.
- 추가선택 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완납하였더라도, 추가선택 품목비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통 유의사항]

- 본 입주자모리공고는 2023.12.01일 사업계획승인 도면 및 2024.08.08. 사업계획승인 변경 도면 및 2024.10.10. 사업계획승인 변경(2차) 도면 기준으로 하되, 그 외에 "사행자"가 관계법량에 따라 사업사행변경인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발생 시 "시행자"의 결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확장시 난간때는 철제난간대로 적용되며, 이로인해 일부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택배, 이삿짐, 구급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고, 일부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은 현장여건과 상품특화 및 개선으로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 할 경우 분양 후 설계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시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사전고지하지 않습니다.
-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지정수성페인트, 지정 석재뿎칠 마감입니다.(단, 계단실 및 E/V 코어외벽은 수성페인트 마감)
-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은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보관함은 지상1층 각 동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정차 구간 및 소방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시설물,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 시설물 위치, 형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및 시설물 설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지주변의 동측, 서측, 북측의 산지와 남서측의 청평중학교 등의 향후 개발계획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 조망, 빟공해, 소음, 악취 등 생활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일반사항

- 본 공고문에 미기재 및 오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건축법」및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환경(현오시설 위치, 도로, 소음, 일조, 조망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유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라며, 유의 사항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의 각종 인쇄물 상의 조감도, 투시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입면 디자인[저층부 석재, 줄눈, 도장 디자인, 입면 디자인(BI/CI, 상부층 장식 요소 등)], 각종 시설물(조경, 창호, 필로티, 외부 계단 등), 동선 체계 등이 시행 주체 및 국가 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조경 공사, 주변 시설 공사 등으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의 생활에 다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급면적 표시 방법은 ㎡으로 표기되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에 의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 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호수 지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 본 모집공고를 위해 견본주택에 게시된 내용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향후 인·허가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자연재해, 문화재 발견 및 정부의 정책에 의해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 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허가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및 그에 따른 구역 내.외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건축하계선, 도시개발사업 사업지 경계선 등은 최종 측량 결과 및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내부 도로 및 조경계획은 차후 인ㆍ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이나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설계 내용에 대한 변경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 시 제시된 내용과 상이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 면적은 법적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 특화 및 마감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지면적, 대지 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 정리 결과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이 최종 확정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기능·상품개선 등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시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평균형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타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다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청평 주변현황

- 본 단지 남측에는 15m도로(골안길), 남동측으로 25m도로(경추로)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공동주택(경남아너스빌아파트), 학교(청평중학교), 남동쪽으로 청평생활체육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단지 주변의 각 종 시설물(건축물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침해사항을 당사에 이의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동측에는 조종천이 위치하며, 유수량은 빗물의 유입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유수지의 특성상 해충, 개구리 및 기타 야생동물, 유수오염으로 인한 악취, 소음, 등 환경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종천의 수위 및 수량 등은 계절, 날씨 등의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는 약 130m, 단지 동측과 북측으로는 약 120m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어 인접 세대는 조망권 일조 및 채광에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산지의 특성상 야생동물, 해충 및 각종 벌레 등으로 인한 소음, 악취, 진동, 빛공 해, 조망권 차단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어린이 공원이 설치 예정입니다. 해당 공원으로 인해 인접 세대는 소음, 악취, 진동, 빛공해, 조망권 차단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계약자 께서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남측으로 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로 인해 인접 세대는 소음, 악취, 진동, 빛공해, 조망권 차단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계약자 께서는 해당 시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비랍니다.
- 단지 남측으로 경춘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차량 이동으로 인한 소음, 악취, 진동, 빛공해, 조망권 차단 및 교통혼잡, 보행동선 방해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특정 기간 관광을 위한 교통 수요가 급증하여 교통혼잡 등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추가적으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청평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해 인접 세대는 소음, 악취, 진동, 빟공해, 조망권 차단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계약자 께서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경춘로변으로 분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접 세대는 해당 시설로 인해 시야, 조망권 차단, 불쾌감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의 골안길은 도시계획 시설로서 해당 도로의 교통체계. 교차로의 운영방식, 차로계획 도로 선형 및 폭 등은 추후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 경춘로 변으로 근린생활시설(갓 판매장, 중식집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로 인해 소음, 악취, 진동, 빛공해, 조망권 차단 등의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학교

- 당 사업지 학교 배치 예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단지의 학교 학생배치와 관련하여 유아(유치원)은 청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청평면 어린이집 취학이 가능하며, 초등학교는 청평초등학교에 배치 가능하고, 중학교는 청평중학교, 고등학교는 가평 전역에 배치 예정입니다.
-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개발사업 및 학생 발생 추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시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버랍니다.
- 각 교육시설의 학생통학구역 및 학교군, 배정방법 등은 매년 설정 및 고시되며, 향후 학생배치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비랍니다.

#### ■ 주차장

- 전기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각동 지상층 레벨에 34개소[급속 8대, 왼속(과금형) 26대)가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금형 충전 구역은 일반주차구역에 위치하며 전기차의 우선 주차 권한이 없으므로 입주 후 관리 규약에 의거 사용규칙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통행로의 유효높이는 2.3M 이상임(지하층 배관 여건에 따라 유효 높이가 상이할 수 있음)
- 당 단지는 옥외에 49대(전기차, 장에인 전용 포함) 주차가 계획되어 있으며 옥외 주차장으로 인해 인접세대는 빛공해, 소음, 매연, 약취, 조망권하단, 보행권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계약자 께서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사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 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 및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시스템 및 엘리베리터 홀에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용도별·동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정 주차구획 운영·통제는 관리주체 책무입니다.
- 주차장과 공용부 통로공간, 계단실은 비난방·비단열공간으로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동 별로 지하주차장직접 진입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동별 지하주차장 계획이 상이하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출입구 출입램프 인접 세대는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불빛, 소음, 조망, 매연,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계약자 께서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시기 비랍니다.
- 택배차 이용 층수는 각동 1층으로 접안되며 그 외 지하층은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성능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공사 시 구조, 동선, 디자인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부스(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해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은 지하3층 차량 주 출입구에 공동주택과 혼용으로 출입을 이용토록 계획되어 이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유의사항]

#### ■ 단지계획

#### [공통]

- 청평3지구는 단지와 인접하여 경춘로, 청평중학교, 단지 남측에 다세대 주택(3층규모)이 위치하여 있으며 단지에 접하는 시설물(옹벽, 조경, 가로등 등), 도로, 구조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및 인허가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환경의 계획 변경에 따라 소음, 진동, 빛공해, 악취 조망권침해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자연녹지 및 산지에 접하여 시공되며 이로 인해 아생동물 및 해충 등으로 인한 각종 생활 환경 피해(아생동물 침범, 단지내 기물피손 소음, 약취 등)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께서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시기 비랍니다.
- 당 사업지와 인접한 자연녹지 및 산지는 본 사업과 별개로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음, 진동, 빛공해, 악취 조망권침해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관광농원 및 근린생활 시설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규모 및 종류, 건립시기 등은 추후 인허가 및 해당부지 공사 여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해당 시설로 인한 소음, 빛 공해, 악취, 매연, 분진, 해충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공사 현황에 따라 당 사업지의 공사레벨, 옹벽설계(높이 및 수량 등)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 계약자께서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및 북측으로는 패널식 옹벽이 설치됩니다. 해당 옹벽은 공사 여건에 따라 높이 및 수량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는 미관저해, 조망권차단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인접세대(102동, 103동 및 104동 저층 세대) 계약자 께서는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의 옹벽계획(입면디자인, 높이, 식재, 각도, 구배 등)은 본공사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 허용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창부 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및 필로티 내·외부 벽체는 석재 또는 판넬, 석재뿜칠, 석재 미장, 그래픽 도장 등으로 마감재 시공 예정이며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 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산정되어 있으며, 대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지의 측량 결과·관련 법규변경·인허가 변경·성능개선을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배치구조,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 동호수별 위치, 단지 단치에 따른 옹벽의 종류, 형태, 위치, 드라이에어리어,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주택형 계약 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부터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행 동선상에 설치되는 계단 및 장애인 램프 등의 시설물의 형태 및 배치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세대는 일조 수인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께서는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단지 내 차로 등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 주차와 인접한 세대는 이점 양지하여 계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에 접하는 외부 도로에 설치되는 교통 시설물은 운영 방식에 따라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피로침, 단지 사인물, 경관조명(조명형 BI 등)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설치 면적 및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소음·진동·빛 공해 등의 생활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관 개선을 위해 일부 동의 캐노피가 벽면보다 돌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필로티·기둥 위치 등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2조 13호의 부대시설, 14호의 복리시설은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모두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 및 부대시설(펌프실, 전기실 등)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간이 일부 존재합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각의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현재 배치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장소인 휴게공간 및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설치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 위치한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물 및 파고라 크기 및 형태는 추후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하가 과정에 의해 단지 내·외 도로, 부대·복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시설) 등의 선형, 크기, 위치,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지에게 변경시항에 대해 추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단지 내 도로, 시설물 위치, 조경 등은 측량 결과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저층부,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가까운 세대, 도로 및 지상주차장과 가까운 저층부 세대,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 등)의 경우 일조·조망·시생활 침해·빛 공해·분진·냄새·진동 등 환경권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지하(지상)주차장 출입구 진·출입에 따른 소음 및 빛 공해, 펌프실, 전기실, 제연 휀룸, 환기 드라이에어리어 등에 따른 소음 및 냄새·진동, 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쓰레기 보관소, 재활용 보관소, 공용부 실외기실 등)
- 사업부지 단차 구간에 조경석 쌓기, 산벽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이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DA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매연, 조망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측벽세대의 비확장폭은 확장구획의 단열재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 콘크리트구조로 설계되고, 세대 내부 실 간 벽은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 벽체로 시공됩니다. 이때 실간 소음 및 층간소음 전달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느낄 수 있으므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의 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각의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소방용 안전 매트 구간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전체 높이는 공사 여건 및 시공 방법, 피난층, 옥상 조경 공법 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엮,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 주체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세대에 부과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택형별 단위세대에는 전용면적에 발코니 초과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다소 이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동 호수별 위치, 주변 건물 등에 따라 일조, 조망, 기타 주거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관계기관 심의 결과 및 협의에 따라 입주 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성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법령(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분양 계약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을 추진할 수 있으며, 분양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각 엘리베이터 내부 디자인은 수자인 전용 표준 디자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에 대해서는 품질점검 등 용도사용 이후 완전한 원상복구를 진행합니다.

#### ■ 조경 및 주민공동시설

- 무인택배시스템(무인택배함) 사용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무인우편함의 설치 개소는 각 동의 세대수 비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공동 시설물(주민공동시설, 조경, 단지 내부 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준공 이후 조경(옥상조경 포함)관련 유지, 보수, 관리의 시행 주체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 또는 관리사무소에 있으며, 인수인계시 드리는 유지관리계획서 및 지침서를 참고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전·후면에 소방법상 공기안전매트 설치 등 소방 활동 공간이 필요하므로 시설물, 식재가 제한되어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확보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며, 안전매트 구간은 준공 시 변경 가능하므로 반드시 단지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커뮤니티(어린이집) 등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가평군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 쓰레기 부리수거함, 재활용 창고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으로 설치되며, 시공 시 일부 규모 및 위치,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운영을 위한 부대사설(자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환기 휀룸, 제연 휀룸 등) 및 돌출물/시설물(의장용 구조물, 위성 안테나 등),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으로 인해 일조, 조망, 소음, 빛 공해, 분진,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참하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계약하시기 비랍니다.
- 단지 조경 등은 현장 실 시공 단계에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 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조경 시설물, 공동 출입문, 세대 출입구 등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재질·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 설치 및 경영)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결정되며 입주 후 입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사용상 불편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기본적 마감 이외 시설 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 가구, 비품, 서적 등)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 시공 시 위치, 동선, 입면 디자인, 마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조정 또는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디자인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의 계획(경관녹지, 어린이공원 등)에 따라 대지 경계 주변 구조물(조경석쌓기, 옹벽 등)계획은 변경(삭제 또는 수량조절) 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의 위치와 배치계획 상 각 동별로 지상, 지하 동선 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로 주치장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치장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부대 및 복리시설에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집기 비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시설물(주민공동시설, 조경, 단지 내부 도로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 공동으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성능개선 또는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실시공 시 위치, 동선, 입면 디자인 마감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관한 공간계획에 따른 기본 마감 외 기타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101동 및 104동 하부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등의 생활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1동 1층에는 어린이집 및 돌봄센타가 설치되며, 103동 지하 1층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이로인해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방범 관리 시스템 중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은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방범용 CCTV는 주차장, 단지 출입구, 놀이터 등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이동통신설비(설치위치 : 중계기 지하2층 2개소(102동, 104동 PIT), 옥상층 2개소(102동, 104동), 옥외안테나 2개소(102동, 104동))가 설치 될 예정이며, 최종 전파측정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는 분당 105M 운행하는 기종으로 에어컨은 미설치 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지하층 및 지상1층) 동출입구 에어샤워 및 공기청정기가 설치되며, 사용시 공동전기요금이 발생되며 필터 교체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에(지하층 및 지상1층) 설치되는 에어샤워 및 공기청정기 위치 및 사양,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충별로 마감 사양이 다르게 시공됩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서 입주자의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 창호의 유무 및 창호 크기,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본 공사 시 법적 기준 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에어사워 시스템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적용 아이템은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PD, EPS, TPS실 등 각 실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내측 마감면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 계산에 의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인허가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공사 시 일부 조정될 수 있고,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남측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리 동선으로 인해 세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리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은 지하 3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패드 설치 구간은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일부에는 주방환기설비, 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장비의 수증기, 소음, 분진, 진동 등의 영향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배기팬 및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세대의 경우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비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구간 이외 아파트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 면적은 주차대수 기준으로 면적 배분 적용하였습니다.

#### [동별 유의사항]

#### ■ 101동

- 101동 4.5호 라인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어 차량 진출입시 소음, 분진, 진동,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인접한 4.5호 라인 세대는 소음,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1동 1,2,3,5,6호 라인(돌봄센터제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01동 6호 라인 후면에는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2호 라인 후면에는 어린이놀이터와 주민운동시설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2,3호 라인 1층에는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돌봄센터)시설에 의해 냄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6호 라인 측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하부 어린이집 지붕을 일부세대의 전유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1동 하부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고 101동 6호라인 전면으로 주민공동시설 이동을 위한 옥외엘리베이터 및 계단실이 위치하여 이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2.3호 라인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동, 같은동의 음영으로 인해 일조수인하도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 ■ 102동

- 102동 1호 라인 1층에는 차량동선이 계획되어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02동 1,2,3,7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02동 1호 라인 4층 세대는 피난기준 만족을 위해 실외기그릴 일체형 피난기구와 내림식 사다리가 설치 예정입니다. 해당 설비는 본 공사시 현장여건 및 수급 여건에 따라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해당 세대 계약자 께서는 해당 시항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102동 2호, 3호 세대 후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6.7호 라인 후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6호 라인 남측 및 지하1층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2,3 호 라인 북측으로는 약 15m의 보강토 옹벽이 설치 예정이며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조망권, 시야, 채광, 일조 등의 생활 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2동 1,2,3,4호 라인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동, 같은동 및 옹벽의 음영으로 인해 일조수인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103동

- 103동 1.5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03동 1호 세대 전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2.3호 라인 전면 및 지하1층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 1,2호 라인 전면에는 어린이놀이터가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4호 라인 하부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소음, 빛공해, 매연, 분진,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3동 5호 라인 지하기층에는 경로당이 계획되며 이에 따른 인접 세대는 소음, 진동, 악취, 빛공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2,3 호 라인 북측 및 동측으로 약 15m의 보강토 옹벽이 설치 예정이며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조망권, 시야, 채광, 일조 등의 생활 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3동 1,2,3호 라인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동, 같은동 및 옹벽의 음영으로 인해 일조수인한도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 ■ 104동

- 104동 1,3,6호 라인 1층에는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필로티 위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104동 6호 라인 측면에는 지하주차장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빟공해, 매연, 분진, 진동, 악취 등 생활화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4동 4,5.6호 라인 측면 지하2,3층에는 근로자휴게시설, 방재실, MDF실,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있으며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빛공해, 매연, 분진,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호 라인 세대 전면에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소음, 빛공해, 매연, 분진, 진동, 악취 등 생활화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4동 4호 라인 후면, 1,2호라인 전면, 3호라인 지하2층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 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2,3,4호 라인 동측으로는 단지 진입을 위한 차량동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빛공해, 매연, 분진, 진동, 악취 등 생활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2,3,4호 라인 동측으로는 약 15m의 보강토 옹벽이 설치 예정이며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조망권, 시야, 채광, 일조 등의 생활 환경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104동 1.2.3호 라인 일부 저층 세대는 인접동. 같은동 및 옹벽의 음영으로 인해 일조수인한도가 나오지 않을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유의사항]

#### ■ 공통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인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이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 시행위탁사 및 시행수탁사,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변경시 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홈페이지,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과 창호 개폐 방향이 좌우대칭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세대는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사업계획승인 변경 포함)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 면적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로티의 천장 마감 높이는 본 공사시 상부 세대의 시공 여건 등에 따라 높이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 세대는 어린이 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치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참해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 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실외기실에 허향식 피난구가 설치됨에 따라, 해당 피난구 주변에는 가구나 집기 등을 적재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가 제외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해당 관청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평면

- 주택형의 기본 천장고는 약2.30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우물 천장고는 기준 약2.42m이며 치수는 본공사 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기준층세대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가구와 천장 사이에 간격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각 실 위치의 출입문 폭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의 폭·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레인지 후드 상부장에는 소방 법규에 맞게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 배관, 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스 배관과 후드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현관 창고, 양변기 하부, 욕조, 샤워부스, 세면대 하부장(113A/B 욕실2 해당), 침실1 발코니, 다용도실 등 일부 구간은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 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전열 교환 환기장비는 덕트가 노출되어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 바라며, 설치 부위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니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환기. 습기 유입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 화재 등 유사시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피난하여야 합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적체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102동 1호 라인 4층 세대는 피난기준 만족을 위해 실외기 그릴 일체형 하향식 피난구와 내림식 사다리가 적용됩니다. 세부 시항은 본 공사시 헌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해당세대 계약자 께서는 건축계획을 반드시 확인후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기본적으로 하향식 피난구가 공통 설치되나. 최하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천장 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배선공사 등 기능상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 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디딤판, 주방 인조대리석, 욕실 젠다이, 113AB 욕실2의 세면대 상판 및 화장대 상판은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시공된 무늬와 상이할 수 있으며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의 욕조 및 액세서리(수건걸이, 수건선반, 휴지걸이 등)는 본공사 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고,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다용도실(세탁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타일 나누기 및 단차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한 단차로 주방 출입 시 단차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 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 세제가 아닌 중성 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출입문 또는 빌트인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기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김치냉장고는 59타입은 약 1,100mm 너비이며, 84A타입은 약1,150mm로 다른 타입과 사이즈가 상이하며 본 공사시 허용범위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의 도어는 ABS소재로 설치되며 단열 및 차음성능은 없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개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인조 대리석과 인조 강화석 등 석재류와 주방 상판 및 벽은 자재의 특성상 이음 부위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 부위는 줄눈 채움이 시공되지 않으며,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고 하부에 콘센트와 배선이 노출됩니다.
- 세대 내 올림공가(우물천장)의 천장고는 상부 세대 및 당해 층 설비 배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 벽체는 시공 시에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 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및 일반 가구의 마감은 설치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노후화가 발생하며, 자외선 및 각종 세제, 화학약품 등에 의해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방 벽, 욕실 벽과 바닥, 발코니 바닥, 다용도실 바닥, 현관 바닥, 거실 아트월의 타일 또는 세라믹 나누기는 견본주택에 게시된 것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 공사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천장고는 마감재 구배(화장실 등) 및 설비시설로 인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 시설물의 경로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커튼 박스의 길이, 높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 설비 시설물로 인해 다소 변경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세탁실)의 도어 하부의 재료분리대는 마감재 분리를 위해 설치된 사항으로 마루보다 다소 높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의 배기팬과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의 크기는 천장 설비배관에 따라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약 600x600mm 타일로 설치되며 커텐박스 라인에 맞춰 시공되고 커텐박스 라인은 벽지로 시공되고 측면에 재료분리대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외부에 설치되는 난간은 미관 및 성능개선을 위해 형태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승강기 및 각종 기계·환기·공조·전기 등의 설비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 위치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 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해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소방시설, 바닥 배수구, 배선 기구류 등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등 타일 구배 및 설비 배관설치 등으로 인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능개선을 위해 창호 사양(유리종류, 창틀, 크기, 손잡이, 개폐 방향 등), 단열성능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일부 타입의 침실1(안방)과 욕실2(부부욕실) 도어는 열림시 다소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선반은 허용 적재하중을 초과할 시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량 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화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화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 높이 및 출입 도어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창호 크기는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여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합니다.
- 일부 가구가 설치되는 부분의 경우 후면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은 환기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 형태, 재질, 색상, 손잡이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 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전도의 우려가 있습니다. 벽체 구조를 확인하시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목재 도어, 가구 및 타일, 석재 등의 인테리어 마감은 자재 특성상 색감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목창호 손잡이는 본 공사시 색상(유광,무광 포함) 및 형태는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 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 가구류(화장대, 시스템 선반, 붙박이장)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 및 사이즈, 디자인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 계획 및 형별에 따라 설치 위치 및 디자인,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싱크대 하부 장, 상부장 일부는 각종 장비로 인해 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설치되는 벽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등 고정형 가구 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및 세라믹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아일랜드 포함) 하부 및 붙박이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의 배치, 동선, 복도 폭, 수납량은 세대 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벽체 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고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후면 턱 높이(인조대리석 MMA 시공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의 아일랜드 가구와 벽의 벽지가 만나는 부위는 해당 상판과 동일한 인조석 턱이 생깁니다.
- 주방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및 배수관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대 온수분배기 가림판 설치위치는 본공사 시공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천장 속 벽에는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목창호 문선에 도배홈이 설치되고, 가구 등에 설치되는 문선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기능 및 미관을 고려하여 일부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는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힌지, 레일 등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배선 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은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센서등은 견본주택 관람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상시 점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 본 공사시 강마루는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강마루의 코어재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의 분절라인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별 코킹(실란트 등)의 색상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설비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 나누기, 건축 마감재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준 판단기준 제171조)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 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 용량 이외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 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며, 루버 부근에 방충망 또는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해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실 공사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및 발코니, 다용도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 난간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도, 환기 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및 소방 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 최하층 세대 하부에 각 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외벽에 가스 입상 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 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 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 조절기(거실용 혹은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난방공급은 개별난방 방식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배관 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 시 적정 위치를 예상하여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예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기합니다.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등은 타입별 개수가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부 벽면에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평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설치 위치 및 장소는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단자함은 벽면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 / 욕실 / 현관 등 단차 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의 기능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준공 이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한 내부 구조의 변경은 불가하며,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 시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별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실외기실 그릴창호는 단열기능이 없는 타입으로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창호 형태, 색상, 사양, 창호프레임 두께(풍압계산 결과에 따라)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동급의 타사제품으로 설치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는 대피공간이 없으며, 하향식 피난구 및 실외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 발코니, 창호, 옥외공간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 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기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가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 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의 하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하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바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가할 수 없습니다.
- 바람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나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바람장 세대의 발코나 천장에 단열자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바람장세대는 개별 발코나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 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및 조명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시 제공 혹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및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다용도실 포함)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은 안방 발코니 내 허향식 피난구와 겸용으로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안방발코니 바닥슬라브 오픈 부위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므로 상, 하부세대로부터 소음 및 피난구 상부 덮개 위를 지나다닐 때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바닥 및 천장 피난구 위치에 물건 적재나 선반을 설치하게 되면 화재 발생시 피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최하층 및 필로티 상부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의 높이, 폭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계획 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선홈통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는 배수 입상관 또는 생활을 위한 배관이 통과되며 일부 노출되어 미관에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라 단열재 추가 설치 및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 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trap)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미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 레벨이 거실 및 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기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샤시는 22㎜ 복흥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흥·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창호의 외기 직간접 여부에 따라 로이 적용 면은 달라 집니다. 또한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1에서 발코니로 연결되는 창호(분합창)은 22mm 로이 복충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로이는 내측창의 내측면 1면에만 적용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서 세대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 두께 등)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의 폭, 재질, 개폐 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공용부의 창호는 재질, 규격, 사양, 손잡이 형태, 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침실 목창호 문선은 미관 및 시공상의 이유로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및 공용부 창호는 기능성 및 시공성(구조계산, 단열 시뮬레이션, 가시도, 사용성), 관련 기준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 프레임의 구조 형상, 규격 및 위치 색상, 개폐 창호의 위치 및 방향, 방충망의 유형 및 위치, 유리의 사양 및 색상, 프레임과 유리창의 체결 방법, 하드웨어, 난간의 설치 위치 및 디자인, 고정 방법 등)
- 단위세대는 최고 층수 기준에 따라 벽(두께, 길이 등)이 상이하며 위치별로 서비스 면적 유효 폭, 넓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가구 및 마감재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바닥, 벽은 실제 시공 시 재생 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및 빌트인, 가전제품 등으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 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마감자재의 경우 동등 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바닥재는 목재 재질로 이루어진 마루이며 스팀 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의 특성상 부주의에 따른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색, 변형, 비틀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후면과 욕조가 접합 벽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미시공됩니다.
- 화장대의 가구벽은 배선기구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설치된 디자인보다 가구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은 냉장고장 측면에 스위치가 설치되며 가구벽은 두껍게 설치됩니다.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발코니의 도장·마감 재질과 색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마루 굽틀과 주방가구 상판의 인조대리석 마감은 마감재 특성상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상세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일부 벽체는 석고보드 경량 벽체로 시공되며 이에 따라 경량 벽체에 부착물 설치 시 경량 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창호 및 외기 노출 벽면 미감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 전기, 기계설비

- 환기시스템 설치 및 시스템 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천장에 덕트,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공사 시 소방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됩니다.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온수 분배기 및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하부장 내부는 공간이 협소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시 욕실 천장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 및 소제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주방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제공되는 가스 배관, 가스 밸브, 스위치, 조명기구, 수전, 콘센트, 보일러, 전열교환기 등의 설비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가동 시 발전기 D/A에 의한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전 인입 PAD, 통신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외부 배관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홍보물에 표현된 CG(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등)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단지 내 조경계획, 시설계획 등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도서 대비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광고 홍보물 등 CG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 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어린이 놀이터 등의 계획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예정 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여지가 있으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시 제시된 CG,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합니다.

#### **■** 견본주택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는 84B. 113A 타입 총 2개의 유니트가 설치되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전 평면 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겨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의 단지 경계 외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 표현은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본 공사 및 하자 보수 시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은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 법규에 의거 그 개수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내 환기 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등 바닥 및 벽, 천정의 타일(마감재) 나누기는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 및 색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등 줄눈 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합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 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인조대리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코너, 마감재 접합부, 패턴 등은 실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벽체 마감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 공간이 협소하거나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수납장 미선택 시, 냉장고장과 김치냉장고장이 시공되며 사이즈 및 구성은 타입별로 상이하고 비치하는 냉장고 크기에 따라 주방 쪽으로 냉장고가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 및 견본주택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동일하며, 설치 공간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여닫이, 픽스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통신단자함은 팬트리 또는 현관창고 내부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되며, 아울러 관련 법규 변경으로 인해 전기분전함은 침실벽에 매입설치(커버 노출)됩니다. 통신단자함 및 전기분전함 설치에 따라 벽두께가 변경될 수 있고 가구 배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팬트리의 시스템 선반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설치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설치위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월패드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 배치, 평면 배치, 기타 품목 시공 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할 경우 준공 및 시설물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온수 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방가구가 설치되는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스템선반의 하드웨어는 본납 시 동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 난간은 확장형 기준이며,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일부 구간에 난간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에 가스 배관, 렌지 후드, 환기 덕트 등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겨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 공사 시 위치 및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의 VR 동영상은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견본주택 촬영 또는 가상으로 구현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비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 문제이며,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겨본주택 내 설치된 생활가구류, 가전류, 침장 및 커튼류, 전시 조명 등은 연출을 위한 전시 품목이므로 본 공사 시 관련 배관, 배선을 포함하여 설치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 설치된 커뮤니티 시설 이미지는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변경 또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 중단 등의 문제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실 시공 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겨본주택에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 전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시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2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48조의2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정일자는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예정일: 2027년 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60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간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 종료일까지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연체발생 시 연체료 포함)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 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남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남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회의실, 다함께돌봄센터, 다목적실, 주민운동시설(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룸 등),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9의2)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 통로 2.3m, 그 외 통로 2.3m

•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 높이 : 지하 3층 및 지하 1층 2.3m

#### ■ 간리히사 및 간리근애

■ 김디외사 및 김디금액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축/토목/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회사명	㈜나우씨엠건축사사무소	㈜씨에이파트너스	(주)지케이엔지니어링	㈜한성기술단
감리금액	2,532,943,600	666,661,520	815,229,155	105,600,000

<sup>※</sup>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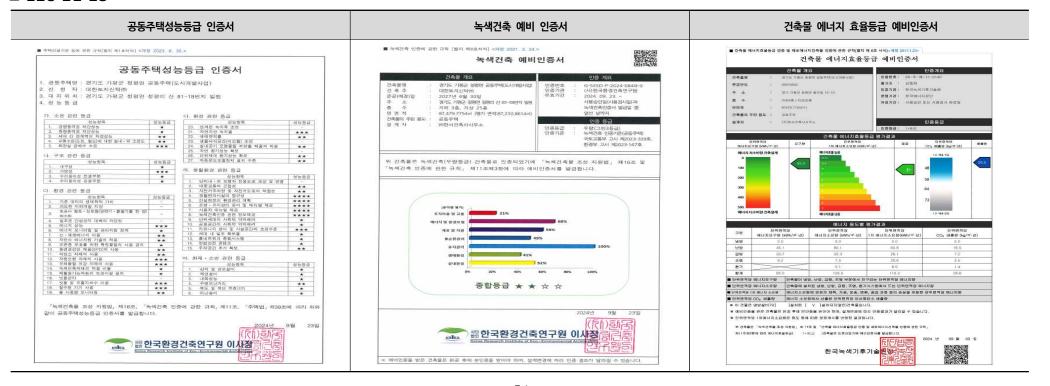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최대유효지반가속도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MMI 등급)
0.197g	VII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구분	적용여부	비고
단열조치 준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설계용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고효율 급수펌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조명설치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del>공용</del> 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 ■ 친환경 관련 인증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주택분양보증약관에 따른 보증기관 및 보증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4-101-0009700 호	154,229,4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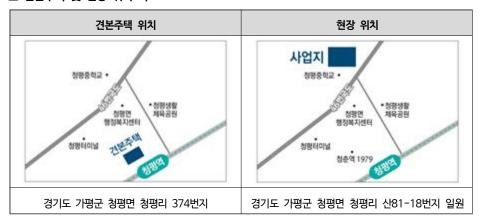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가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하여 진행하는 분양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이고, ㈜한양은 시공사로서 책임준공 의 의무를 다하며, 대한토지신탁㈜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대한토지신탁㈜가 지정한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오시공, 미시공, 사용검사 전에 발생한 하자 포함)은 위탁자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및 시공사 ㈜한양이 연대하여 책임지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에게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와 수탁자 대한토지신탁㈜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견됩니다.
- 개별 분양세대에 대하여는 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케이아 이청평피에프브이㈜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공급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로 납부한 분양대금이 본 사업장의 건축비, 토지비(대출원리금), 기타사업비로 지급되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가 본 사업장의 자금관리 대리사무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계약자 관리, 사용승인,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준공 후 하자보수 등의 책임은 본 사업의 시행자인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에게 있음을 알고 있고, 대한토지신탁㈜에게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 공급대상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건축법,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사	시행위탁사	시공사
상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케이아이청평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양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39, 3층(상일동, 강동타워)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14, 201호(구월동, 일류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8000963	110111-0144347

# ■ 홈페이지: https://www.sujain-chungpyong.co.kr

# ■ 견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약도



### ■ 분양문의: 1551-2338

-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